청암대학교
Cheongam College

2020학년도 제6회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구 분	위원 수
재 적 위 원	9인
참 석 위 원	6인
불 참 위 원	3인

개최일시	2021년 02월 08일(월) 15시	**통 보 일**	2021년 02월 03일(수)
장 소	청암관 1층 세미나실6	**기 록 자**	문병천 (인)
참석위원	정경석(위원장), 최영만, 임하영, 오하연, 최태영, 양귀순	**불참위원**	정용태, 강희환, 양효석
		중도퇴장	-
회의안건	1.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개정(안)		
배포자료	1.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령 2.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신구대조표		
기타사항			
결정사항	1.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개정(안) 의결		

【간서명란】					
위원장		위 원		위 원	

청암대학교
Cheongam College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내용

위 원 / 경 과	회 의 내 용
개회	위원장은 재적위원 9명중 6명 참석으로 정족수가 되어 간사의 성원 보고를 듣고 개회를 선언하고 인사 말씀 후 회의를 시작함.
정경석(위원장)	오늘 회의 안건인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개정(안) 심의' 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처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안)' 건에 대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처 문병천 선생께서는 안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천(간사)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사항과 등록금심의위원회 기능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의 개최 사전 공개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다 ㅇ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정 주요 내용 · 학생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구성단위별 구성비율 제한, 전문가 선임시 학교와 학생이 협의 등 · 회의록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ㅇ학교회계의 예 · 결산 기능 삽입과 회의소집시 목적과 자료를 투명하게 사전공개하기 위한 조문 변경 등
회의자료 검토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개정(안) 신구대조표를 자세히 검토하다.
정경석(위원장)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개정은 2021.01.21. 시행된 고등교육법 제11조의 일부개정은 대부분의 대학이 교직원 위원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학교 측의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 전문가의 선임 권한을 가지고 있어 등록금 책정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구성단위별 제한과 전문가 선임시 협의하도록 하여 학생의 권리를 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또한 회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의 개최 사전공개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임하영(위원)	규정개정취지와 규정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정경석(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규정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간서명란】					
위원장		위 원		위 원	

청암대학교
Cheongam College

위 원 / 경 과	회 의 내 용
오하연(위원)	동의합니다.
최태영(위원)	재청합니다.
정경석(위원장)	동의와 재청이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찬성해주셨으므로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개정(안)' 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석(위원장)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에 저를 포함한 3명이 간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두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귀순(위원)	최영만 위원님과 최태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원(위원)	동의합니다.
정경석(위원장)	위원님들의 동의에 따라 회의록 간서명은 저를 포함하여 최영만 위원님과 최태영 위원님이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 사실을 확인함.

【폐 회 : 2021. 02. 08.(월) 15:30】

등록금심의위원회	위 원 장	정 경 석	
	위 원	강 희 환	불 참
	위 원	정 용 태	불 참
	위 원	최 영 만	
	위 원	임 하 영	임하영
	위 원	오 하 연	오하연
	위 원	최 태 영	최태영
	위 원	양 효 석	불 참
	위 원	양 귀 순	양귀순

청암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간서명란】					
위원장		위 원		위 원	